2022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정책관

목 차

Ⅰ 지방세법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추가 (법§9⑦) ·····1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법§10, §10의2~§10의7) 5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20①) ·····22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법§21③) ·····24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법§41, §43) ·····27
6. 지방소비세 인상 및 인상분 안분 근거 마련 (법§69, §71) ·····30
7.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 (법§78) ·····36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 (법§89, §103의13) ·····38
9.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 (법§99, §103의30) ·····42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법§101, §103의28) ·····45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법§103의11) ·····51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법 §103의31⑥) ·····54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법§103의34) ·····57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법§103의59) ·····58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103의61) ·····61
16.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법§147) ·····63
17.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법§106) ·····65
18.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법§107) ·····70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법§120) ·····72
20.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법§122) ·····74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 (부칙§1의2) ·····76

Ⅱ 지방세법 시행령

1.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금액 고시주체 변경 (영§4①) ·····79
2.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 신설 등 운영 개선 (영§4조의2, 영§4조의5) ···80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규정 합리화 (영§4조의3) ·····85
4. 시가표준액 (지방)국세청장 협의조항 삭제 (영§4④,⑤) ·····88
5. 소형 LPG 저장조 취득세 과세 제외 (영§5①2) ·····89
6.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영§11의2) ·····92
7.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시 과세제외 대상 범위 명확화 (영§11의3) ·94
8.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영§12의3②) ·····97

9.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영§14 등) ·····101
10. 신탁수수료의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18①4) ·····126
11. 차량 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영§20⑭) ·····128
12.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명확화 (영§20⑫) ·····130
13. 공공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영§26①35) 132
14. 리모델링조합의 사업목적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영§26, §28의2)135
15.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영§28의2) ·····137
16. 주택 취득세 중과시 세대기준 합리화 등(영§28의3①,③) ·····139
17.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등 (영§38의3) ·····141
18.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 §39 관련 별표1) ·····142
19.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귀속 등 규정 (영§57①,②, §58①,②) ·146
20.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관련 규정 수정 (영§73,§74) ·····152
21. 지방소비세 인상분 안분방식 규정 등 (영§75) ·····154
22. 지방소비세 관련 별표 2, 3 개정 (영§75) ·····172
23. 주민세 개인분 '세대원에 준하는 자' 과세제외 범위 보완 (영§79①) ··180
24. 주민세 사업소분이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명확화 (영§83) ··182
25.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 (영§92③) ·····185
26.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환급 시 환급가산금 조문 정비 (영§98, §100의18) 187
27.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 (영 §100의23, 규칙 §48의10) ···193
28.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영§100의27) ·····198
29.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합리화 등 (영§102) ·····200
30. 1세대 1주택자 범위 명확화 (영§110의2) ·····208

Ⅲ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안분기준 통보규정에 「기초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추가 (규칙§34) ·····213
2. 특별징수의무자 폐업시 연말정산 환급 규정 보완
(규칙§48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216
3.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관련 신고 서식 보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19
4.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서식 보완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22
5.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변경 (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224
6. 개인지방소득세 서식 개선 등 (규칙 별지 제40호의7, 제40호의11 서식) ··226
7.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서식정비 (규칙 별지 제63호) ·····230
8. 토지,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개편 (별지 제69호 서식 등) ·····233
9.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신설 (규칙 별지 제63조의2) ·····246

Ⅳ 고 시

1. 30세 미만 미혼자녀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마련 ·····248

지방세법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추가 [법§9⑦]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규정 ○ **상속개시 이전** 차량이 폐차 멸실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신 설>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확대 ○ (좌 동) ○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 개정내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차령초과로 이용할 수 없어 폐차 말소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필요

※ 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말소 가능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적용요령

○ 법 시행(2022.1.1.)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칙 제3조)**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 관련법】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 폐차 ·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 ·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4.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 ·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법 § 10, § 10의2~ § 10의7)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무상·유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 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격 등

조	항	조문 내용
§10	①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②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③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 **개수·지목변경·구조변경 취득 과표** - (원칙) 증가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④	■ **과점주주 간주취득 과표**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 가액 × 주식지분
	⑤	■ **사실상 취득가격 ②단서 인정** -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 -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가격 - 공매 취득
	⑥	■ **개인 건축·대수선 과표②단서 인정** - 법인장부상 90%입증시 인정
	⑦	■ **사실상 취득가격②단서 일부** - 실거래 및 국세조사가액 통보, 신고가액보다 높은 경우 추징, 적은 경우 환급 적용 않함
	⑧	■ **취득의 시기 시행령 위임**

조	조문 내용
§10	■ **과세표준 기준 : 취득당시의 가액**
§10-2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10-3	■ **유상취득(부동산등 승계)**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10-4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10-5	■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취득** **① 차량·건설기계 취득** 1) 유상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무상 : 시가표준액 **② 법인 합병·분할,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취득**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10-6	■ **간주취득** **① 개수·지목·구조변경**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② 과점주주**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 가액 × 주식지분
§10-7	■ **취득의 시기 시행령 위임**

□ 개정내용

○ **(개정방향)**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기준, 무상·유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시 세부사항을 규정

○ **(과세표준)**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

❶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법인·개인 모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적용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시가인정액)** 취득일로부터 6월내 거래된 해당물건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예외)** 상속 취득시에 시가표준액, 시행령상(ex 1억원) 이하의 부동산등의 취득시 시가와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
- **(부담부증여)** 채무부담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봄

※ **(기타 시행령 규정사항)** 평가원칙, 평가기간, 감정기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등

❷ **(유상거래)**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산정·적용함

*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높게 신고하여 양도세 회피하려는 경우

- 법인은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규정(현행과 동일)

❸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개인이 건축하여 취득당시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❹ **(과표특례)** 차량기계장비를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적용

- 그 밖에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법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 운영

***<과세표준 특례 대상>**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2.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3. 「도정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의 취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득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취득당시가액 및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

❺ **(간주취득)** 개수·지목변경·구조변경(사실상의 취득가격), 과점주주(원가) 등 의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은 현행 규정과 동일

❑ 적용요령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인정액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개정 전	개정 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	

개정 전	개정 후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개정 전	개정 후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개정 전	개정 후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

개정 전	개정 후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5(무상·유상승계·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개정 전	개정 후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개정 전	개정 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

개정 전	개정 후
	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 1. ~ 7. (생 략) 8. ----------「주택법」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임시사용승인서나 ----------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② ----------. ----------

개정 전	개정 후
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1. ----------. ---------- 제10조의6제3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 ---------- 제10조의6제1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 ---------- 제10조의6제4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법 § 20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기한	□ 증여 등 무상취득 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 신고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예외)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도입·개정함에 따라,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무상취득(상속 제외)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빠른 경우, 그 등기일까지로 함(현행과 동일)

※ 납세자 편의와 국세(상증세법 §68)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신고납부기한 일치

❑ 적용요령

○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과 연관된 규정으로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법 § 21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 개정내용

○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10)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지자체장이 과표를 경정하여 직권부과하기 전에,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제외

❑ 적용요령

○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과 연관된 규정으로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법§41, §4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온라인분 납세지 지정 ○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 전국 광역자치단체

□ 개정내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륜, 경정에 대한 온라인 분 레저세의 발생*에 따라 납세지 규정

*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21.8. 이후 경륜·경정의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허용

- 온라인 발매는 그 소비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므로 본장 소재 자치단체와 전국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납세의무자) ----------사업을 하는 자는 ----------.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신 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

개정 전	개정 후
	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6 지방소비세 인상 및 인상분 안분 근거 마련 (법 § 69, § 7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지방소비세 인상(4.3%p)* 및 인상분 안분 근거 마련 * '22년 2.7%p, '23년 1.6%p 단계적 인상 예정 ※ 세율 : (현행) 21% → ('22년) 23.7% → ('23년) 25.3%

❑ 개정내용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의 단계적 인상* 및 인상분에 대한 안분 근거 규정 마련(§71③4) * (현행) 21% → ('22년) 23.7% → ('23년) 25.3%

- 인상분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잔여분으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하고, 구체적 안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구분		법률 개정 내용
세율 인상		1 (§69②) 세율 인상 21% → 25.3% ※ 다만, '22년은 세율 23.7% 적용 (부칙 제4조)
안분기준	2단계 전환사업 비용보전	2 (**§71③4.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입
	재정 조정분	3 (**§71③4.나.**) 2에 따른 시·도 전환사업 총 보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군·구 조정교부금과 시·도 교육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과 시·도 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 세종과 제주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잔여분	4 (**§71③4.다.**) 2·3를 제외한 잔여분 안분기준 ※ 잔여분 중 60% 시·도, 40% 시·군·구(세종, 제주 포함) 안분

❑ 적용요령

○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2. 1. 1.)부터 '26. 12. 31.까지 효력 유지(부칙 제2조)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2. 1. 1.)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

○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2 1. 1.부터 '22. 12. 31.까지 지방소비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23.7%를 적용(부칙 제4조)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1천분의 253----------.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1. ----------세액의 253분의 50----------.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세액의 253분의 60----------.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3. ----------세액의 253분의 100----------.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

개정 전	개정 후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개정 전	개정 후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7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 (법§78)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민세 개인분 세율	□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 가능
○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제한세율)	○ **(원칙)**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신 설 >	○ **(예외)**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1만5천원 내에서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 내에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세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청구기준과 방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세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법 § 89, § 103의1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 특칙(제1~5호)을 병렬적으로 규정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 소득지급지와 복권 투표권판매지의 관계 명확화 (별도 표기 → 일반조항"단서")

	구분	납세지
1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호	이자·배당소득 등 (본점에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소득 지급지
3호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지급)	복권·투표권 판매지
4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구분	납세지
1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4호	그 밖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원칙) 소득 지급지 (예외)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 : 복권·투표권 판매지
3호	(삭 제)	
2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개정내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명확히 규정

- 제2호*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삭제하고, 제3호의 규정은 제2호*의 단서로 이동하여 특칙의 적용 순서를 법체계에 반영

* 조문 순서도 기존 제2호를 제4호로 이동

❑ 적용요령

○ 종전 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복권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1등의 경우 판매지, 그 외 당첨금은 지급지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생 략)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단서 신설>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삭 제>
4.·5. (생 략)	2.·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9조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개정 전	개정 후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 ----------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 ④ (현행과 같음)

9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법§99, §103의30)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 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 13까지,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가산세액의 10%로 규정	□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81조의14* 조항 추가, 「법인세법」 제74조의2* 조항 추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개정내용

○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30에 열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의 가산세 부과 조항을 인용하여 부과

- 서류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유사한 가산세 규정의 통일적 적용

○ 「지방세법」 제99조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의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미제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 납세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을 추가함(지법 §99①, §103의30①)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①「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 ---------.
<신 설>	②「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법§101, §103의28)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개정내용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급공제 적용기간 확대

❑ 적용요령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62	② ----------.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2. ----------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	② ----------. ----------

개정 전	개정 후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⑤ ----------.

개정 전	개정 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법§103의11)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중 비거주자의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구성원 간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소득신고(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각각 적용)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비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개정내용

○ 국세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의 개인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가 확보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소법 §124②)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규정 마련

❑ 적용요령

○ '22.1.1.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3조)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② (생 략) <신 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

개정 전	개정 후
③·④ (생 략)	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103의31⑥)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 개정내용

○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 준용 규정을 보완하고,

- 국세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비영리법인 의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104의7)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적용요령

○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하던 규정을 법에 명확히 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국세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의 경우 이 법 시행('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조특법 §104의7)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개정 전	개정 후
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법 § 103의34)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의 외국납부세액 차감은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 별도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 연결사업연도 관련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별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 적용요령

○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법 § 103의59)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신 설>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은 제외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 소득세 환급 통보 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개정내용

○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 (지법§103의59)

- 다만, 경정사실 통보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39조(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불가한 환급건(오납액)에 한해 적용하며,
-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자체장이 환급대상을 통보받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다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실제로 환급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므로, 환급 '통보를 받은 날'로 설정

○ 국세청 과세정보 통보 대상에 감액경정도 포함

○ 법인세 환급 통보 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의무 규정

❑ 적용요령

○ '22.1.1.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5조)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 경정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 경정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
<신 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법 § 103의6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9년, '20년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 '21년, '22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좌 동)
- 1개월이내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 (좌 동)

□ 개정내용

○ 2021년과 20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년)

□ 적용요령

○ '22.1.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6조)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개정 전	개정 후
① (생 략)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 2022년 ----------.

16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법§147〕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정내용

○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후 2개월 이내(분납기한)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납부세액에 따른 분할납부 가능 금액*>

납부세액	분할납부 가능 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의 분할납부 규정을 준용·신설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병기 고지되는 재산세가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가능

(예) 재산세 300만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00만원인 경우
■ **(기존)** 납기 내 650만원(=250만원+400만원), 분납기한에 50만원 납부
→ **(개정)** 납기 내 500만원(=250만원+250만원), 분납기한에 200만원 납부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47조(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 ⑦ (생 략)	제14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 ⑦ (현행과 같음)

17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법§106)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현황 과세**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 ○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는 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 부적법한 이용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경우 등 현황과세 배제

❑ 개정내용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법 제106제2항)

○ 재산세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 **불법적인 이용**이면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법 제106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적용요령

○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허가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간 주택으로 과세해온 관행** 등을 고려,

- 법 시행 **직전연도('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부칙】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개정조문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생 략)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신 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물 등에서 ----------. 1.·2. (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개정 전	개정 후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개정 전	개정 후
	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1. ----------(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단서 신설>	---------- ---------- ---------- ---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18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법§107)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생략 - <신 설>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현행과 같음 - 8호 : 파산재단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파산채무자)

❑ 개정내용

○ 「채무자회생법」 상 **파산재단**의 **공부상 소유자는 파산채무자**이지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경우 **소유권**(파산채무자)과 **관리·처분권**(파산관재인)이 분리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 파산절차 상 파산관재인의 **권리와 (중립)의무**, **보유세나 건보료**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파산 선고 후 종결 시까지 **파산 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파산채무자)로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법§120)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재산세 관련 신고대상 및 기한	□ 신고대상 추가 및 기한 연장
○ (대상)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대상 추가) 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등이 다른 재산의 소유자**
* ①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나 미등기된 재산, ②개인 명의의 종중재산, ③신탁재산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0일 이내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5일 이내

❑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나, 납세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고 기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기회 확대

❑ 적용요령

○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 15일 ----------.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 등기·등록이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 설>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신 설>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0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법§12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 세부담 상한율 ○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 개정내용

○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 (종부세 상한율) 법인은 폐지, 조정지역 2주택 300%, 3주택 300%, 그 외 150%

⇒ **법인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105%~130%→ **150%로 조정**

<개정 전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주택		
	3억이하	3~6억원	6억원 초과
150%	105%	110%	130%

⬇

<개정 후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주택			
	개인			법인소유
	3억이하	3~6억원	6억원 초과	
150%	105%	110%	130%	**150%**

❑ 적용요령

○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 (부칙 § 1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일몰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개정내용

○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기한을 3년 연장('21.12.31. → '24.12.31.)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법률 제10221호, 2010.3.31. 부칙]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의2(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1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금액 고시주체 변경(영 § 4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적용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금액 **변경** ○ 행안부장관이 건축물의 유형별 건축단가를 조사하여 산정·고시

□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축물의 유형별 건축단가를 조사하고, 적정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산정하여 고시

□ 적용요령

○ 2023.1.1. 기준 결정·고시되는 시가표준액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 1. (현행과 같음) 1의2. ----------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

2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 신설 등 운영 개선(영 § 4의2, § 4의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납세자의 의견제출 절차 부재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기구 부재	□ 납세자의 의견제출 **절차 신설** □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운영** ○ 교수, 감평사 등 전문가로 구성

□ 개정내용

○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지자체가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여부를 검토

- 당초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행안부 승인을 거쳐 변경·결정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행안부는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 지방세정책관을 포함하여 부동산학 교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적용요령

○ 2023.1.1. 기준 결정·고시되는 시가표준액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

개정 전	개정 후
	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개정 전	개정 후
	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 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개정 전	개정 후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

개정 전	개정 후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회계·조세·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규정 합리화(영 § 4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시가표준액 변경요청 사유, 기준시점에 대한 모호한 규정	□ 시가표준액 변경요청 사유, 기준시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

❑ 개정내용

○ 기준가격의 재조사 또는 산정기준 변경 요청 사유를 명확히하고, 가격조사 시점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명시

현 행(§4③ 단서)		개선안(안 영§4의3)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시·도지사가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적용요령

○ 2023.1.1. 기준 결정·고시되는 시가표준액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정 전	개정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시가표준액 (지방)국세청장 협의조항 삭제 (영§4④,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시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규정 존재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시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규정 **삭제**

❑ 개정내용

○ 시가표준액 결정 및 변경·결정 시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규정 삭제

- 과거 국세(상증세법)에서 부동산 평가 시 시가표준액을 활용*했으나, 현재 국세청은 별도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협의규정 불필요

*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적용요령

○ 2022.1.1. 기준 결정·변경 결정되는 시가표준액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④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삭 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삭 제>

5 소형 LPG 저장조 취득세 과세 제외 (영 § 5①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저장조 등 시설 : 과세대상 규정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 저장 시설을 포함	□ 저장조 중 과세제외 대상 신설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소형 (저장용량 1톤 이하) LPG 저장조 과세 제외

❑ 개정내용

○ 현행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물 외에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은 취득세가 과세

○ 1톤이하 소형 LPG 저장조의 경우 취사, 난방 등 서민생활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소형 저장조 기준 마련

❑ 적용요령

○ 법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 -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 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 · 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 · 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 ·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영 § 11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기준 <신 설>	□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조합원 신탁토지와 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안분

❑ 개정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은 사업종료 후 취득세 과세(3.5%)

※ (사업절차) 조합원 소유토지 조합에 **신탁**(비과세) → 미동의자토지 등 조합 **추가취득**(**과세**) → 준공후 **일반분양**분 건축물·**토지(과세)**

○ 조합에 과세되는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중 조합이 추가매입한 토지 등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면적을 산출시 대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정 운영방식과 상이

⇒ 전체 토지에서 추가매입토지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

$$\text{과세 면적} = \text{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times \frac{\text{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text{전체 토지의 면적}}$$

* 조합의 추가매입 토지의 경우 향후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분 중 어디로 귀속될지 알수 없으므로 일반분양분에 귀속되는 안분비율만큼 공제

❑ 적용요령

○ 현행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일반 분양 분토지의 면적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의 면적)

7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시 과세제외 대상 범위 명확화(영 § 11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위탁자 지위 이전시 제외대상	□ 과세제외 대상 범위 명확화
○ (1호)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	○ (1호) 현행과 같음
○ (2호)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 (2호) 삭 제

❑ 개정내용

○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과세 제외토록 규정

-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음(1호)

- 또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제외(2호)

○ 현재 과세제외 대상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외에는 해당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이하 자구를 **삭제**하여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 위탁자 지위이전 납세의무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득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6.(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신탁법】

○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8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영 § 12의3②]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9⑦]

개정 전	개정 후
□ 상속개시 이전 차량취득세 비과세 사유 규정	□ 상속개시 이후 차량취득세 비과세 사유 추가
○ **상속개시 이전** 차량이 폐차·멸실되는 경우	○ (좌 동)
<신 설>	○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 하는 경우 추가

❑ 개정내용

○ 피상속인 명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인해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 신설

*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 11년 이상 승용, 12년 이상 중형 화물·승합 차량 등

❑ 적용요령

○ 법 시행일(2022.1.1.)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됨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
<신 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제3항----------.

참고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 ·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영 § 14, § 14의2~4, § 18, § 18의2~6, § 19, § 20)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10 등)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조	내 용	조	내 용
-	〈신 설〉	§14	시가인정액 산정기준 등
-	〈신 설〉	§14의2	시가평가 예외부동산(1억이하)
-	〈신 설〉	§14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신 설〉	§14의4	부담부증여 과표 기준
§18	사실상취득가격인 직·간접비용 범위	§18	사실상취득가격인 직·간접비용 범위
-	〈신 설〉	§18의2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저가매매) 내용 규정
※현행 §18③ 법인장부 불인정 예외 규정* 이관 * 중고차 매매시 과표 : Max 장부가, 시표		§18의3	천재지변 등 중고차량 사실상 거래가격 인정 범위
-	〈신 설〉 ※ 해석 및 지침 명문화	§18의4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법인 합병, 분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과표 규정
§15	차량 변경의 범위 등	§18의5	차량 변경의 범위 등
§17	지목변경의 범위 등	§18의6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등
§16	개인이 취득시 사실상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범위	〈삭 제〉 ※개인과 법인 차별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19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시 과표 안분 방법	§19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시 과표 안분 방법
§20	취득의 시기 등	§20	취득의 시기 등

□ 개정내용

○ **(무상취득)** 무상(상속은 제외)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적용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감정, 경·공매가액 및 유사사례가액

【시가인정액 주요 내용】

구 분		기준일	비고
해당부동산	매매가액	매매계약일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거래한 가격은 적용 않됨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 & 평가서 작서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 - 단 10억이하 부동산 및 법인의 합병·분할은 1개의 평가액 인정
	경·공매가액	경·공매가액 결정일	※상증세와 달리 "수용가액"불인정
유사사례가액		위의 원인별 기준일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 않됨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 지자체장은 해당 평가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감정기관을 불성실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원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유사사례가액 등) 및 시가표준액의 90%에 미달

○ (**유상·원시취득**) 개인과 법인이 차별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유상 및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되,

- 특수관계인간에 거래시에 매매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시가인정액-사실상취득가액 = 3억원(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 (**기타 취득의 특례**)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표를 변제액, 교환액, 담보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하고,

- 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도록 규정

※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 (**과세표준**)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

□ 적용요령

○ 시행일(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따르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따른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그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의 면적, 위치, 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중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

개정 전	개정 후
	정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보아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취득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 전	개정 후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

개정 전	개정 후
	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

개정 전	개정 후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채무액을 인수한 것을 입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5조(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 합계액을 말한다. ---------- 금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4.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22.1.1.시행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7. ---------- <단서 삭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사실상취득가격----- 않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개정 전	개정 후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개정 전	개정 후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개정 전	개정 후
	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

개정 전	개정 후
	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공시지가 ×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신 설>	제18조의5(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말한다.
<신 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

개정 전	개정 후
	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

개정 전	개정 후
	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 취득 당시의 가액---------. <단서 삭제>
1. 주택 부분:	1. ---------

개정 전	개정 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취득 당시의 가액 × ---------- / ----------
2. 주택 외 부분:	2. ----------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의 가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 취득 당시의 가액---------.
1. 주택 부분:	1. ---------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취득 당시의 가액 × ---------- / ----------
2. 주택 외 부분:	2. ----------

개정 전	개정 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취득 당시의 가액 × ---------- / ----------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 취득 당시의 가액--.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 ----------. --- ---------- 않고 ---------- ---------- 서류로 --------- ---------- ---------- 않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개정 전	개정 후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 않은 ----------. ---------- 않고 ---------- 서류로 ---------- 않는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0 신탁수수료의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 § 18①4)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탁수수료 과세표준 범위를 법령해석으로 운영 ※ 대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정운영 방식과 상이 •(현행) 위탁자 지급 신탁수수료 신탁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과표에 포함	□ 신탁수수료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 수탁자가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

❑ 개정내용

○ 효율적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신탁을 통해 부동산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모든 직·간접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 취득자(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정운영 방식과 상이

<대법원 2020.5.14.선고 2020두32937판결 등>
신탁수수료는 신탁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탁수수료는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를 과표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요령

○ 유권해석 등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1. ~ 3. (생 략) 4.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11 차량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영 § 20⑭ 신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차량등의 취득시기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차량등)를 제작하여 판매시 매수인에게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 제작자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 차량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 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규정 ※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및 과세권 확보

❑ 개정내용

○ 제작하는 차량등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

- (판매시)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직접사용)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적용요령

○ 현행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개정 전	개정 후
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④ ----------.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12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명확화 [영 § 20⑫]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점유시효취득 시기 규정 없음 ※ 대법, 행안부, 조심 결정사례 취득시기 상이 - 대법, 행안부 : 시효완성일 - 조심 : 판결확정일, 등기일	□ 점유시효취득 시기를 명문화 ○ 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규정 ※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및 과세권 확보

❑ 개정내용

○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법원 판결 및 조심 결정이 각각 상이하여 과세실무 및 납세자의 혼선 초래

※ 시효완성일(대법원2003두13342, 2004.11.25. 등 / 우리부), 판결확정일(조심2010지0534, 2011.3.10. 등), 소유권이전등기일(조심2008지601, 2009.3.17. 등)

○ 통상 점유취득은 시효완성 요건이 충족된 후 소송 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효완성자는 수년이 지나 취득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에,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과세권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문제 발생

⇒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⑫·⑬ (생 략)	⑬·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13 공공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영 § 26①3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대도시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 규정 - 주택건설업 : 중과 제외 - 오피스텔건설업 : 중과 <신 설>	□ 공공전세 주거용오피스텔 대도시 중과 제외 ○ (대상법인) 공공주택사업자*와 '22년까지 약정체결한 건설사업법인 * LH 및 SH, GH 등 지방공사 ○ (제외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중 공공전세주택(주거용오피스텔)사업 ○ (제한요건)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함

❑ 개정내용

○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등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

*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토지 8%(4%×3배 - 4%), 건축 4.4%(2.8%×3배 - 4%)

⇒ 민간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22년 한시)

신축 매입약정 (민간→LH 등) | **민간건설법인** (오피스텔 신축) —준공 후 양도⇨— **LH 또는 지방공사** (오피스텔 매입)

❑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①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매도하기로 2022.12.31.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② 그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생 략)
<신 설>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

제2조(정의)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14 리모델링조합의 사업목적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영 § 26, § 2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리모델링주택조합 중과 <신 설> ※ (현행) 조합의 경우에는 멸실목적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중과 제외	□ 리모델링주택조합 중과 제외 ○ **(대도시 중과 제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중과제외 업종에 추가 ○ **(주택 중과 제외)** 멸실목적외에 매도청구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외

□ 개정내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12%) 적용

○ 또한, 리모델링조합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5년 미만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12%) 대상에 해당

⇒ 주택공급사업자, 주택조합 간의 과세형평 및 주택 중과세 취지를 고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리모델링 조합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34. (생 략) <신 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 1. ~ 34. (현행과 같음)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13. (생 략) <신 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13. (생 략)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영 § 2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 취득세 제외 → 3년이내 다른 용도 사용시 추징	□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더라도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됨을 명확히 함

❑ 개정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제외

- 다만, 3년 이내에 해당 용도(가정어린이집)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하여 추징

○ **가정어린이집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이용실태 및 주택 중과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른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운영사항 및 주택 중과 취득 등을 고려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요령

○ 현재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16 주택 취득세 중과시 세대기준 합리화 등 [영 § 28의3①,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 취득세 중과시 1세대 기준	□ 1세대 기준 개선
○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독립 세대 구성 가능 소득 기준 : 지침으로 운영 중	○ 30세 미만 미혼 소득 기준 명시 (운영지침 → 행안부장관 기준)
○ 분가 목적 주택 취득시 1세대 판단 기준 : 취득일 까지 해당 세대분리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한 것으로 간주

□ 개정내용

①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두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

- 다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세대 인정

⇒ 현행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부 소득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경상적·반복적 소득, 현금유입이 있는 소득이 연평균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② 자녀 등 세대원이 분가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시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전입신고시 분리된 세대로 간주

□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 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② ----------.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17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등 (영 § 38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 ○ 과세자료 제출 근거 없음	□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 신설 ○ 과세자료 통보 근거 마련 - 통보기간 : 매월 말일 - 통보대상 : 행안부, 지자체

❑ 개정내용

○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 국세(증여세)와 지방세(취득세)의 과세표준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세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적용요령

○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과 연관된 사항으로 2023.1.1. 이후 결정하는 증여세 자료부터 적용, 2023.2월부터 관련 자료 제출받게 됨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8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 § 39 관련 별표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에 대해 과세 ○ 과세대상 : 총 943개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	□ 근거 법령 제·개정 사항 등 반영 ○ 과세대상 : 총 961개 - 신설 21개, 개정 10개, 삭제 3개

❑ 개정내용

○ 과세 근거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신설 21개)

*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애니메이션산업법」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대상 면허의 명확화 등에 따른 **기존 과세 대상에 추가정비***(개정 10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의무 추가 등

○ 과세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 대상 삭제***에 따른 **단순 정비**(개정 3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신고의무' 삭제 등

❑ 적용요령

○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일(22.1.21.)에 따라 제3종 제157호 및 제4종 제11호는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2 개정조문(영 별표1)

○ 신설(21개) : 제1종(3), 제2종(4), 제3종(7), 제4종(7), 제5종(-)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종	면허종별 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등록	등록	1 2 3 4	241 200 264 204	신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기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21.7~)	법 개정 ('21.7.27.)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등록	3	265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법 개정 ('16.1.2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신고	3	266	신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법 제정 ('19.12.3.)
「기계설비법」에 따른 등록	등록	3	267	신설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법 제정 ('18.4.17.)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정	지정	4	205	신설	「소금산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법 개정 ('13.3.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및 면허	허가 면허	1 2 3 4	242 201 268 206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법 제정 ('19.4.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허가	1 2 3 4	243 202 269 207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유상운송허가	법 제정 ('19.4.3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등록	3	271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법 개정 ('19.1.15.)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종	면허종별 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허가	4	208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법 제정 ('11.7.2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지정	지정	4	209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법 제정 ('11.7.2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허가	4	210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법 제정 ('11.7.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등록	2	203	신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법 개정 ('20.6.9.)

○ 종별 정정(행위 및 업종 추가, 명칭 변경)

- 10개 : 제1종(4), 제2종(2), 제3종(2), 제4종(2), 제5종(-)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종	면허종별 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및 등록	신고 등록	1 2 3 4	135 137 135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	근거법률에 따른 면허 명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신고	1 2 3 4	240 199 263 2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추가) 신고	---------- ---------- ---------- ---------- ----------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업의 구분·분류 (법 제10조) 개정('20.12.8.)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종	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허가	1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허가 및 신고	근거법률에 따른 면허 명확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정	인증	1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시설의 인정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20년 신설 조항 오기 수정

○ 종별 정정(삭제)

- 3개 : 제1종(-), 제2종(-), 제3종(2), 제4종(1), 제5종(-)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종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신고	3	1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신고	삭제	의무규정 삭제 ('21.7.20.) *'22.1.21.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신고	4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삭제	의무규정 삭제 ('21.7.20.) *'22.1.21. 시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인가	인가	3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삭제	법 개정 ('15.8.28.)

19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귀속 등 규정(영§57①,②, §58①,②)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41 등)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온라인 발매분 안분기준 ○ 본장 소재 자치단체 50%,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50% 신고납부 □ 온라인 발매의 범위 구체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으로서 본장, 장외발매소 현장 발매분은 제외

❑ 개정내용

○ (세수안분)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를 본장 소재 지자체 50%, 전국 지자체 50%로 배분하되, 그 기준은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에서 해당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함

※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전국지자체 20% 신고납부

○ (온라인 발매의 범위 구체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으로서 본장 또는 장외발매소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제외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납세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전국 시·군·구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시·군·구에서는 징수된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에 대한 세입처리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안분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2. ----------. <단서 삭제>
<신 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군·구의 안분비율 각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 전국 19세 이상 인구
<신 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시·군·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20 B: 각 시·군·구의 안분비율 각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 / 전국 19세 이상 인구
<신 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전	개정 후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 -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 납부해야 ----.

참고 관련 법령 조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0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관련 규정 수정 (영 § 73, § 74)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71)

개정 전	개정 후
□ 납입관리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를 "납입관리자"로 약칭	□ 납입관리자 ○ "납입관리자" 약칭 삭제 ※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입관리자 범위 확대(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개정내용

○ 기존 시·도지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20.12.29.공포, '21.12.30.시행)

- 시·도지사만을 납입관리자로 약칭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 삭제 필요

< 납입관리자 확대 관련 「지방세법('20.12.29.공포, '21.12.30.시행)」 개정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적용요령

○ 개정규정은 '22. 1. 1.부터 적용

2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73조(납입관리자) ---------- 특별자치도지사----------.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 ----------.

21 지방소비세 인상분 안분방식 규정 등 [영§75, 별표 4, 별표 5]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71]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지방소비세 인상분(4.3%p)* 안분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규정 * '22년 2.7%p, '23년 1.6%p 단계적 인상 예정 ※ 세율 : (현행) 21% → ('22년) 23.7% → ('23년) 25.3%

❑ 개정내용

○ 2단계 전환사업 보전액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 규정(§75②)

구분	법률 위임 내용	시행령 규정 내용
2단계 전환사업 비용보전	① (**§71③4.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금액	① (**§75②6.**)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재정 조정분	② (**§71③4.나.**) ①에 따른 시·도 전환사업 총 보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군·구 조정교부금과 시·도 교육전출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75②7.**) 별표4(조정교부금), 별표5(교육전출금) 신설
잔여분	③ (**§71③4.다.**) ①·②를 제외한 잔여분 안분기준 ※ 잔여분 중 60% 시도, 40% 시군구(세종, 제주 포함) 안분	③ (**§75②8.**) ○ (시·도) 잔여분 60%를 소비지수와 가중치 기준으로 안분 ○ (시·군·구)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수와 역재정자주도 기준으로 안분

※ 전환사업 보전액은 부칙으로 단계적 인상 규정('22년 1조 312억원, '23년 1조 2,209억원 추가)

○ 산재되어 있던 용어 정의 조항을 체계화하고 새 용어 정의 추가(§75①)

❑ 적용요령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2. 1. 1.)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75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2. 1. 1.부터 ‘22. 12. 31.까지는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함

2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② ----------. ----------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마. ----------
해당 시·도의 안분액 = (A + B) × C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 제75조제2항제2호나목---------- --- 제75조제2항제2호다목----------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5. ----------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10%) -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4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제2항제 ----= 3호----------제2× ---------- ---- 항 제 4 호 ---------- -- ----------
<신 설>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신 설>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2.7%) − (제2항제6호의 금액 + 제2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0%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4.3%) − (제2항제6호의 금액 + 제2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0%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시·군·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7%) − (제2항제6호의 금액 + 제2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 인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 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 1/2 2)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3%) − (제2항제6호의 금액 + 제2항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 인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 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 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정 전	개정 후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

개정 전	개정 후
	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삭 제>
④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후단 삭제>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1항제3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2항 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 통보해야------.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	⑦ ----------제2항제2

개정 전	개정 후
호라목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라목---------- 통보해야 ----.

[별표 4]

시·군·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총액	금204,655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20,08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329
중구	69
용산구	411
성동구	665
광진구	816
동대문구	1,041
중랑구	1,132
성북구	1,297
강북구	1,150
도봉구	1,128
노원구	1,528
은평구	1,252
서대문구	87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613
양천구	914
강서구	1,123
구로구	1,073
금천구	788
영등포구	529
동작구	866
관악구	1,232
서초구	25
강남구	0
송파구	295
강동구	934

□ 부산광역시 (계: 금12,31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74
서구	807
동구	688
영도구	888
부산진구	891
동래구	717
남구	884
북구	1,13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627
사하구	1,070
금정구	908
강서구	357
연제구	802
수영구	630
사상구	721
기장군	711

□ 대구광역시 (계: 금9,20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726
동구	1,255
서구	1,253
남구	1,30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1,456
수성구	916
달서구	1,237
달성군	1,058

□ 인천광역시 (계: 금4,12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54
동구	514
미추홀구	734
연수구	322
남동구	59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742
계양구	623
서구	271
강화군	106
옹진군	61

□ 광주광역시 (계: 금5,47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727
서구	990
남구	1,02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1,518
광산구	1,217

□ 대전광역시 (계: 금5,25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1,428
중구	1,206
서구	1,20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458
대덕구	961

□ 울산광역시 (계: 금4,32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042
남구	813
동구	77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742
울주군	948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1,890백만원)

□ 경기도 (계: 금38,24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2,230
성남시	2,062
의정부시	1,275
안양시	1,316
부천시	1,783
광명시	1,009
평택시	1,520
동두천시	830
안산시	1,483
고양시	2,264
과천시	341
구리시	735
남양주시	1,855
오산시	819
시흥시	1,198
군포시	84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627
하남시	782
용인시	2,164
파주시	1,486
이천시	512
안성시	1,037
김포시	1,166
화성시	1,963
광주시	1,142
양주시	1,048
포천시	1,060
여주시	1,000
연천군	836
가평군	834
양평군	1,017

□ 강원도 (계: 금8,68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1,181
원주시	1,540
강릉시	986
동해시	432
태백시	277
속초시	471
삼척시	379
홍천군	424
횡성군	39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310
평창군	415
정선군	271
철원군	308
화천군	238
양구군	227
인제군	267
고성군	281
양양군	280

□ 충청북도 (계: 금12,19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4,742
충주시	1,394
제천시	1,060
보은군	556
옥천군	645
영동군	61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449
진천군	783
괴산군	578
음성군	874
단양군	500

□ 충청남도 (계: 금14,70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3,360
공주시	832
보령시	814
아산시	1,803
서산시	1,084
논산시	835
계룡시	474
당진시	1,15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557
부여군	615
서천군	605
청양군	481
홍성군	765
예산군	686
태안군	631

□ 전라북도 (계: 금12,49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3,359
군산시	1,554
익산시	1,693
정읍시	787
남원시	630
김제시	677
완주군	76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403
무주군	380
장수군	374
임실군	406
순창군	415
고창군	527
부안군	528

□ 전라남도 (계: 금9,73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847
여수시	1,156
순천시	1,140
나주시	565
광양시	688
담양군	333
곡성군	232
구례군	225
고흥군	358
보성군	277
화순군	38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265
강진군	254
해남군	430
영암군	336
무안군	478
함평군	256
영광군	318
장성군	302
완도군	303
진도군	237
신안군	351

□ 경상북도 (계: 금16,80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2,370
경주시	1,437
김천시	869
안동시	923
구미시	1,928
영주시	644
영천시	710
상주시	648
문경시	534
경산시	1,410
군위군	335
의성군	45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338
영양군	305
영덕군	392
청도군	433
고령군	366
성주군	433
칠곡군	745
예천군	502
봉화군	365
울진군	426
울릉군	243

□ 경상남도 (계: 금25,32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6,163
진주시	2,229
통영시	99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778
창녕군	745
고성군	775

사천시	1,008
김해시	3,103
밀양시	1,041
거제시	1,631
양산시	2,138
의령군	605

남해군	671
하동군	691
산청군	653
함양군	631
거창군	770
합천군	702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3,807백만원)

비고:

이 표의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text{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별표 5]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총액	금 34,260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8,887
부산광역시	2,558
대구광역시	1,828
인천광역시	1,019
광주광역시	1,145
대전광역시	1,143
울산광역시	891
세종특별자치시	252
경기도	4,843

교육청	금액(백만원)
강원도	1,158
충청북도	1,166
충청남도	1,593
전라북도	1,312
전라남도	1,297
경상북도	1,963
경상남도	2,500
제주특별자치도	705

비고:

이 표의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text{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참고 각 단계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① 5%p('10년 도입) :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안분

*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고려, 전국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발표)의 각 지자체별 비중에 따라 세수 배분

**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의 세수쏠림 방지를 위해,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의 가중치 적용

② 6%p('14년 인상)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감소 규모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를 고려하여 안분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취득세 감소비율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교육 전출금 공제	보통교부금 배분비율(20.27%)
		시·도 몫	시·군 몫		
【시·도】	【시·도】	【시·도】	【시·군】	【시·도】	【교육청】

③ 10%p('19 4%p+'20 6%p)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의 소요비용 등을 3년간('20~'22년) 보전*하고, 잔여분은 ① 기준으로 안분 * '26년까지 연장

ⓐ 전환사업 보전분		ⓑ 재정조정분		ⓒ 잔여분
㉮시·도	㉯시·군·구	㉰조정교부금	㉱교육전출금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④ [신설] 4.3%p('22 2.7%p+'23 1.6%p) :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소요비용 등을 5년간('22~'26년) 보전하고, 잔여분은 시·도에 ① 기준으로, 시·군·구에 ① 및 인구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안분

① 전환사업 보전분		② 재정조정분		③ 잔여분	
㉮시·도	㉯시·군·구	㉰조정교부금 (시·군·구)	㉱교육 전출금	㉲60% 시·도	㉳40% 시·군·구

22 지방소비세 관련 별표 2, 3 개정 [영 § 7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3 ○ 당해연도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 반영)를 적용하여 매년 현행화 필요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3 ○ '22년도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 반영)를 적용하여 현행화

2 개정 내용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10%p('19년 4%p '20년 6%p) 인상되면서, 인상분 배분을 위한 안분기준을 신설하여 시행 중('20.1.1.)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10%p 안준기준 >

Ⓐ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 재정조정분(0.9조/정액)		Ⓒ 잔여분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시·군·구】	【시·군·구】	【교육청】	【시·도】

○ 이 중 재정조정분은 전환사업 보전분 전액이 전환사업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과 교육전출금 재원에서 시·도 전환사업 보전분 금액을 제외함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교육전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별도로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

○ 재정조정분(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 보전액)*의 재원이 되는 시·도별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1:2:3)가 적용되어 안분되므로

* 조정교부금 보전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교육전출금 보전액은 별표 3에 규정

- 매년 변동되는 시·도별 소비지수를 반영하여 재정조정분도 매년 현행화 필요

❑ 적용요령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2. 1. 1.)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안

[별표 2]

시 · 군 · 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총액	금816,263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81,87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339
중구	282
용산구	1,677
성동구	2,709
광진구	3,325
동대문구	4,245
중랑구	4,616
성북구	5,288
강북구	4,687
도봉구	4,597
노원구	6,228
은평구	5,104
서대문구	3,57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2,498
양천구	3,725
강서구	4,579
구로구	4,372
금천구	3,211
영등포구	2,157
동작구	3,530
관악구	5,022
서초구	102
강남구	0
송파구	1,201
강동구	3,809

□ 부산광역시 (계: 금52,24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018
서구	3,442
동구	2,933
영도구	3,780
부산진구	3,800
동래구	3,056
남구	3,748
북구	4,82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2,683
사하구	4,536
금정구	3,869
강서구	1,498
연제구	3,401
수영구	2,687
사상구	3,069
기장군	2,898

□ 대구광역시 (계: 금37,52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960
동구	5,115
서구	5,109
남구	5,31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5,934
수성구	3,735
달서구	5,042
달성군	4,314

□ 인천광역시 (계: 금16,79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627
동구	2,094
미추홀구	2,993
연수구	1,312
남동구	2,41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3,025
계양구	2,537
서구	1,107
강화군	433
옹진군	248

□ 광주광역시 (계: 금22,30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2,965
서구	4,033
남구	4,16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6,188
광산구	4,959

□ 대전광역시 (계: 금21,43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820
중구	4,917
서구	4,91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1,869
대덕구	3,919

□ 울산광역시 (계: 금17,61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249
남구	3,314
동구	3,16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3,025
울주군	3,865

□ 경기도 (계: 금159,02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9,272
성남시	8,575
의정부시	5,301
안양시	5,473
부천시	7,414
광명시	4,197
평택시	6,322
동두천시	3,453
안산시	6,169
고양시	9,414
과천시	1,417
구리시	3,056
남양주시	7,715
오산시	3,405
시흥시	4,983
군포시	3,52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2,607
하남시	3,251
용인시	9,001
파주시	6,179
이천시	2,131
안성시	4,313
김포시	4,850
화성시	8,164
광주시	4,748
양주시	4,359
포천시	4,406
여주시	4,157
연천군	3,476
가평군	3,466
양평군	4,227

□ 강원도 (계: 금35,40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814
원주시	6,278
강릉시	4,019
동해시	1,763
태백시	1,130
속초시	1,921
삼척시	1,546
홍천군	1,728
횡성군	1,62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1,262
평창군	1,692
정선군	1,106
철원군	1,256
화천군	968
양구군	925
인제군	1,089
고성군	1,145
양양군	1,139

□ 충청북도 (계: 금49,70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336
충주시	5,684
제천시	4,319
보은군	2,266
옥천군	2,626
영동군	2,49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1,829
진천군	3,195
괴산군	2,354
음성군	3,567
단양군	2,037

□ 충청남도 (계: 금59,99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3,711
공주시	3,397
보령시	3,320
아산시	7,360
서산시	4,424
논산시	3,409
계룡시	1,934
당진시	4,72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2,273
부여군	2,511
서천군	2,468
청양군	1,961
홍성군	3,124
예산군	2,799
태안군	2,576

□ 전라북도 (계: 금50,93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3,693
군산시	6,334
익산시	6,902
정읍시	3,210
남원시	2,570
김제시	2,761
완주군	3,10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1,641
무주군	1,547
장수군	1,524
임실군	1,655
순창군	1,693
고창군	2,148
부안군	2,152

□ 전라남도 (계: 금39,66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451
여수시	4,711
순천시	4,648
나주시	2,305
광양시	2,804
담양군	1,359
곡성군	945
구례군	916
고흥군	1,459
보성군	1,127
화순군	1,55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1,079
강진군	1,036
해남군	1,752
영암군	1,368
무안군	1,948
함평군	1,043
영광군	1,297
장성군	1,232
완도군	1,235
진도군	965
신안군	1,430

□ 경상북도 (계: 금68,49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660
경주시	5,859
김천시	3,541
안동시	3,761
구미시	7,860
영주시	2,626
영천시	2,893
상주시	2,640
문경시	2,175
경산시	5,749
군위군	1,365
의성군	1,83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1,377
영양군	1,245
영덕군	1,596
청도군	1,765
고령군	1,491
성주군	1,764
칠곡군	3,036
예천군	2,047
봉화군	1,486
울진군	1,737
울릉군	989

□ 경상남도 (계: 금103,24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5,121
진주시	9,086
통영시	4,047
사천시	4,109
김해시	12,648
밀양시	4,244
거제시	6,649
양산시	8,714
의령군	2,46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3,170
창녕군	3,036
고성군	3,159
남해군	2,736
하동군	2,819
산청군	2,664
함양군	2,571
거창군	3,139
합천군	2,860

비고:

이 표의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text{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별표 3]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총액	금 139,662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6,228
부산광역시	10,428
대구광역시	7,450
인천광역시	4,154
광주광역시	4,667
대전광역시	4,660
울산광역시	3,631
세종특별자치시	1,027
경기도	19,741

교육청	금액(백만원)
강원도	4,721
충청북도	4,755
충청남도	6,496
전라북도	5,347
전라남도	5,289
경상북도	8,004
경상남도	10,190
제주특별자치도	2,874

비고:

이 표의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text{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3 주민세 개인분 '세대원에 준하는 자' 과세제외 범위 보완 (영§79①)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세대원에 준하는 자 과세제외	□ 세대원에 준하는 자 보완
○ 납세의무자와 주소·체류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표 상 가족인 외국인	○ (좌 동)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납세의무자가 아님)의 직계비속인 경우 추가

❑ 개정내용

○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납세의무가 있으나,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자'는 과세제외(법§75)

-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규정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과세제외 요건을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에서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개정

-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30세 미만 세대주 사례별 주민세 개인분 과세여부>

직계존속	직계존속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세대구성	과세여부
있음	납세의무 있음	단독	비과세
		동거인 有	과세
	납세의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독	과세→비과세
		동거인 有	과세
없음	-	단독	과세
		동거인 有	과세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2.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4 주민세 사업소분이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명확화 (영§8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과요건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요건 중 근거법조문과 배출시설의 범위 명확화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무허가 또는 무신고 사업소	○ (현행과 같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사업소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점검결과 부적합판정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무허가 또는 무신고 사업소	○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사업소

□ 개정내용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최근 1년 이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가 중과되며,

- 영 제83조 각호에서 중과세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범위를 4가지 유형으로 규정

<개정 전 영 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

1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나,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
2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소
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나,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
4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소

○ 영 제83조제2호·제4호는 제1호·제3호와 달리, **근거 법조문**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호)도 동일한 경우로 같이 정비

❑ 적용요령

○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614, '20.2.10.)에 따라 법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판단여부(지방세정책과-614, '20.2.10.)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소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해당 사업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25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 [영§92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소득유형 : F, G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 소득유형 : F, G, Q, R, V, T(연금, 기타)

❑ 개정내용

○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과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이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26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 환급 시 환급가산금 조문 정비 (영§98, §100의18)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인용	□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인용 (내용변동 없음) ※ 현행 법률(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하는 개정안 반영

❑ 개정내용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르도록 조문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

- 이 외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조항의 세부규정 정비

❑ 적용요령

○ 인용하는 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라 산출한 금

개정 전	개정 후
	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소급공제 결손금액)
<신 설>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개정 전	개정 후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③ (생 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전	개정 후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않은 ----------.
법 103조의28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소급공제 결손금액)	법 103조의28제3항 ---------- × (---------- 소급공제 받지 않은 ---------- / ----------)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 ----------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⑦ ----------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징수해야 ----.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7항---------- 않는다.

27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 (영 §100의23, 규칙 §48의10)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시 비연결법인 규정을 준용 ○ 차감방식은 개별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토록 관련 신고 서식에 명시	□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시 비연결법인 규정을 준용하되, ○ 세부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차감방식, 이월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지방세법 §103의34②,

□ 개정내용

○ (차감방법)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 산출된 후 외국법인세액을 개별 연결법인 단위에서 차감

- 이월분도 개별 연결법인 단위로 관리하고 연결집단 단위에서 통산하지 않음

○ (차감한도) 각 연결법인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차감(배분없음)

	법인구분 연결법인명	연결집단 계	모법인 A	자법인 B	자법인 C	자법인 D	비고
연결 소득금액 계산	각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결손금)	2,000	1,200	1,800	△200	△800	(법인세) 연결집단의 결손금 △1,000을 소득이 있는 법인의 소득금액 비율로 배분→ A:B=2: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2,000	800	1,200	0	0	
연결 과세표준 계산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0	0	0	0	0	
	과세표준 및 개별귀속액	2,000	800	1,200	0	0	
	외국법인세액	△1,400	0	△1,000	0	△400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배분없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개별귀속액	1,000	800	200	0	0 (△400*)	*D법인의 미차감액 △400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됨

○ (이월방법)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모두 차감하지 못해 각 연결법인별로 이월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차감하도록 차감 순서 규정

○ (제출서류)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려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를 각각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5의3

○ 제출기간, 환급규정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규정 준용

□ 적용요령

○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신설>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

개정 전	개정 후
	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 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액 계산에 관

개정 전	개정 후
	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⑥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

개정 전	개정 후
	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28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영 § 100의27)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승인시 적용하는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인용	□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승인시 적용하는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 인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환급가산금 기본이자율 조항 개정 추진 중

- 단일 조문에서 항으로 구분하고, 단서*를 추가함

* 불복청구 결정에 따라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정(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이자 지급 시 기본이자율의 1.5배 이자율 지급)

○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 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본문**에 따른 이자율

❑ 적용요령

○ 인용하는 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29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합리화 등 (영 § 102)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106)

개정 전	개정 후
□ 무허가 등 위법한 공장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0.2%) 적용 가능	□ 위법한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제외 ○ **종합합산**(0.2~0.5%) 적용
□ 동종 사업자 간 상이한 분리과세 적용 ○ 공항시설용 토지 인천공항공사(분리과세) vs 한국공항공사(별도합산) ○ 열생산설비용 토지 한국난방공사(분리과세) vs 그 외 사업자(별도합산)	□ **동종 사업자** 간 분리과세 적용 **형평성 제고** ○ 한국공항공사 **공항기본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 주차장 등 수익사업 제외, 2025년까지 한시 적용 ○ 열생산설비용 토지에 대해 **사업자 구분없이 분리과세** ※ 2025년까지 한시 적용
□ 학교법인 소유 토지 과세구분 ○ '95년 이전 취득 : 분리과세 ※ 이용현황과 무관 ○ '96년 이후 취득 :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구분	□ **분리과세 취지**에 따라 **용도에 따른 구분 체계**로 개편 ○ **교육목적용** 토지 :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분리과세** ○ **교육목적 이외** 토지 : **이용현황(용도)**에 따라 과세구분
□ 종교단체 및 향교의 분리과세 적용범위 ○ 수익사업 및 유료사용 토지 모두 분리과세 제외	□ 종교단체 및 향교의 분리과세 **적용범위 명확화** ○ 유료사용 부분 삭제
□ < 신 설 >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제도 도입** ○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 신청 가능

□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무허가 등 위법 공장용 부속토지 분리과세 배제(§102①)

○ (개정내용) **무허가·불법적** 이용 공장용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공장용 토지에서 **제외**

○ (적용요령)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세부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범위 판단 시** 무허가·불법적 이용 공장 건축물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법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분리과세 면적에서 우선 제외** 후,「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공장기준입지면적 내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2 동종사업자 간 분리과세 적용 형평성 제고(§102⑥)

○ (공항시설용)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중 **고유·필수사업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유료 주차장**, 제2호 중 판매·위락시설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분리과세에서 제외**

○ (열생산설비용) **사업자 구분없이** 열생산설비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하되,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 향후 업계 환경변화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 고려

○ (적용요령) **'22~'25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설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3 학교법인 소유토지 과세구분 정상화(§102⑧)

○ (개정 전) **용도와 무관**하게 **취득시기만을 구분**하여 **분리과세** 혜택 부여

※ '9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으로 활용해도 저율 분리과세**

구 분	과세구분(지방세법 시행령)		감면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95년 이전 취득	'95년 이후 취득	
교육용 토지	분리과세	합산과세	100%
교육용 이외 토지	분리과세	합산과세	-

○ (개정 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적용.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

○ (적용요령) 사립학교가 **'95년 이전 취득**한 토지 중 非교육용 토지는 **유형별 분리과세 적용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적용 배제**

❶ 골프장·대규모점포·관광숙박업 활용 부지 : '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배제

❷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대상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과세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분리과세 적용비율	100%	90%	80%	60%	40%	20%

❸ ①, ② 외의 토지

과세연도	2022 ~ 2026	2027	2028	2029
분리과세 적용비율	100%	70%	40%	10%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분리과세적용비율	100/100	90/100	80/100	60/100	40/100	20/100

2. 제1호 외의 토지

과세연도	2022 ~ 2026	2027	2028	2029
분리과세적용비율	100/100	70/100	40/100	10/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종교단체 및 향교의 분리과세 적용범위 명확화(§102⑧)

○ (개정내용) **전통사찰보존지와 향교** 토지 중 분리과세 적용 제외 대상인 **"유료로 사용부분"을 삭제**

- **실비변상적 수준**의 대가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 (적용요령)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제도 도입(§102⑪,⑫신설)

○ (개정내용)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재산세 부과 전 신청**을 통해 대장을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재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

○ (적용요령)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⑥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전	개정 후
	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1. ----------. ---------- 사용되는 ----------.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 세 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⑧토지소재지	⑨용도/지목		⑩면적	⑪취득 일자	적용사유			
	공부상	현황			연월일	사유	⑫ 적용조항	⑬ 적용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30 1세대 1주택자 범위 명확화 (영 § 110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수 제외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
□ 미등기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 **미등기 상속재산의 납세 의무자**와 **일치**
○ ①상속지분이 많은 사람 → ②거주자 → ③연장자	○ ①사실상 소유자 →②상속지분이 많은 사람 → ③연장자

❑ 개선방안

○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도 종전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소유·운영하는 등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어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도 **주택 수 제외**가 됨을 명확히 함

○ **공동소유 미등기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일치** 시킴으로써 미등기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시 소유자를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 ----------

개정 전	개정 후
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4. ----------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안분기준 통보규정에 「기초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추가 (규칙§34)

1 개정개요

※ 시행령 개정사항 연계(영§75⑧)

개정 전	개정 후
□ 안분기준 통보 ○ <신 설>	□ 안분기준 통보 ○ 인상분(4.3%p)에 대한 세수 안분 방식 중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잔여분의 40%)하는 기준 비율 추가 ※ 별도 통보 서식(별지 제35호의4) 신설

❑ 개정내용

○ 현행 안분기준 통보 규정(규칙§34)에 **기초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을 추가**하고, 별도의 **통보 서식(별지 제35호의4)도 신설**

○ 안분기준을 통보받는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시·도	시·도지사
시·도 교육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적용요령

○ '22. 1. 1.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안분기준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안분기준 통보)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각 시·도 및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군·구의 안분비율을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시·도 및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75조제7항에----------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 신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4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시·군·구 안분비율 통보**(년도 적용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년도 시·군·구별 안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단위: %>

시·군·구	안분비율	비고	시·군·구	안분비율	비고
계					

끝.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행 정 기 관 의 장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2 특별징수의무자 폐업시 연말정산 환급 규정 보완 [규칙§48의2, 별지 §41호의2서식]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폐업한 경우 환급대상 ○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 불가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폐업한 경우 환급대상 ○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 가능

❑ 개정내용

○ 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관할 지자체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폐업·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41호의2서식)

❑ 적용요령

○ '22.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생 략) <신 설>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지방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폐업·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폐업·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특별징수 의무자 (회사)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연말정산 결과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환급액

신청하려는 금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 부도사업장 [ ] 폐업된 사업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천징수 영수증 2.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관련 신고 서식 보완(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 개정개요

※ 시행령 개정사항 연계(영 § 58①)

개정 전	개정 후
□ 과세대상이 발생한 장소 구분 ⑪ 장 내 / 외 	□ "장내/외" → "발매구분"으로 변경 ○ 발매구분은 본장, 장외발매소, 온라인 중 택1하도록 함 ⑪ 발 매 구 분 본장/ 장외발매소/온라인 중 택1

□ 개정내용

○ 발매 형태를 "장내/외"에서 "발매구분"으로 변경하고, "본장/장외발매소/온라인" 중 택1할 수 있도록 수정

○ 그 외 용어를 법률상 용어와 일치("납세자" → "납세의무자")시키고, 서식 등 정렬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레저세 신고납부 시 적용

2 개정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레저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납세의무자	① 성 명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영 업 소)		⑥ 전 화 번 호	

과세물건 내역

⑦과세대상	⑧발매기간	⑨발매수	⑩발매총액	⑪발매구분	⑫안분율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할 세액

세 목	⑬과세표준	⑭세율	⑮산출세액	⑯감면세액	⑰기납부세액	가산세			⑲신고세액합계 (⑮-⑯-⑰+⑱)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⑱계	
합 계									
레 저 세									
지방교육세									

※ 첨부서류: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영수)일자인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신고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 : 해당 상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물건 내역란: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⑪ 발매구분: 과세대상 사업장(본장), 장외발매소,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안분율:「지방세법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른 안분비율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서식 보완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69)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서식 ○ 지방소비세율에 현행 세율(21%) 명시 ※ (서식) 지방소비세(F)=E*×21% * E(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 내역) =신고납부+부과징수+과년도분-환급	□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서식 ○ 세율 변동 시 변동된 세율이 서식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세율 조항 인용 ※ (서식) 지방소비세(F)=E×지방세법 제69조제2항의 세율

❑ 개정내용

○ 징수명세 통보 서식의 세율 표기를 기존 “21%“에서 ”「지방세법」제69조 제2항의 세율”로 변경, 세율 변동이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서식 보완

❑ 적용요령

○ ’22. 1. 1.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년 월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일련번호	특별징수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F=E×지방세법 제69조제2항의 세율)
	코드	관서명		계 (E=A+B+C-D)	신고납부 (A)	부과징수 (B)	과년도분 (C)*	환급 (D)	
합 계			당월						
			누계						
1	0000	A세무서	당월						
			누계						
2	0000	B세무서	당월						
			누계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변경 (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69, § 71)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서식 ○ 1단계 재정분권 관련사항까지만 반영	□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서식 ○ 지방소비세 인상분(4.3%p)을 반영하여 안분 명세 서식 변경 ※ 시·군·구 통보용 서식(부표) 추가

❑ 개정 내용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4.3%p)의 안분내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안분명세서 변경**

❑ 적용요령

○ '22. 1. 1. 이후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안>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　　년　　월 분)

(단위: 원)

일련번호	관서명	총 계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에까지에 따른 안분액						영 제75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 안분액						
				소계	가목 (취득세 보전분)	나목 (지방교육세 보전분)	다목 (지방교부세 보전분)		라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마목 (라목에서 공제되는 금액)	소계	제3호 (전환사업 보전분)		제4호 (재정조정분)		제5호 (잔여분)	소계	제6호 (전환사업 보전분)		제7호 (재정조정분)		제8호 (잔여분)	
														가목	나목					가목	나목	가목	나목
			시·도		시·도	시·도	시·군	시·도	시·도 교육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등	시·도 교육청	시·도	시·군·구 등

6 개인지방소득세 서식 개선 등(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제40호의11서식)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에 별도 신고의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에 신고의무 안내 ○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추가

□ 개정내용

○ 모두채움납부서 서식 상에 **신고납부하는 세목(납세자 신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상기시키고, 기타 신고서 보완사항 반영

- ①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 설명 문구 추가, ②국세(양도소득세) 신고일자와 세무서명 표기란 추가, ③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추가*

* (별지 제40호의11서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별지 제40호의7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 적용요령

○ '22.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군·구 단위)	
⑤ 신고유형	32 추계-단순율 ⑥ 기장의무 2간편장부대상자 ⑦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기한후 신고	

❷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㉗ 과세표준란의 금액	
⑨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⑪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㉚ × 10%	
⑫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㊳, ㊴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⑬ 결정세액: ⑩-(⑪+⑫)	
⑭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및「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	
⑮ 총 결정세액: ⑬+⑭	
⑯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㊸×10%	
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⑮-⑯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앞쪽의 자르는 선 아래 납부서에 "X"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르는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_____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시·군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음성안내 바코드 18㎜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출국의 경우 사망일·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32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2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⑭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㉗ 과세표준란의 금액		
⑮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⑯ 산출세액: [과세표준(⑭)×세율(⑮)-누진공제액]		
⑰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㉚ ×10%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㊳, ㊴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⑲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㉑ 총 결정세액: ⑲+⑳(합계란 금액)		
㉒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㊸×10%		
㉓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㉑-㉒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및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군·구 보관용)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군·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납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 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군·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 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군·구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관리번호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 세 지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등, 확정신고의 경우 12월31일(사망·출국의 경우 사망일·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군·구 단위)		
②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일						
⑤ 과세표준						
⑥ 세율						
⑦ 산출세액						
⑧ 감면세액						
⑨ 외국납부세액공제						
⑩ 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계					
⑫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부(환급) 할 총세액 (⑦-⑧-⑨-⑩+⑪-⑫)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시·군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일자(세무서명) :

음성안내 바코드 18mm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서식정비(안 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1 개정개요

※ 법률 개정사항 연계(법 § 103의61)

개정 전	개정 후
□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정내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에 한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 서식 필요

○ 기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을 활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 적용요령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부과고지 내용

⑥ 부과세액		⑦ 과세대상	⑧ 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3. 분할납부 신청내용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⑩ 분할납부할 세액		⑪ 분할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은 재산세 분납대상이고,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부과고지 내용란

⑥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⑧ **납부기한:**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연도와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3.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⑩ **분할납부 세액:** ⑥ 부과세액에서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⑪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재산세 고지서 서식 개정 (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토지·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 행정청 중심의 용어, 단순 나열식	□ 납세자가 **알고 싶은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개편 ○ 배치 개선 및 감면혜택 안내 ※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신설

□ 개선방안

○ (토지·건축물) 납세자가 **고지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

- (**배치 개선**) 납부금액을 고지서 중앙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방법은 좌측, 법적 고지사항(과세근거) 등은 후면 표기
- (**경감 내역 표기**) **세부담상한 효과**와 세율특례 적용에 따른 **세율 인하 혜택, 감면 혜택**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안내 추가**

※ 시작장애인용 음성 바코드 추가

○ (주택) 고지서 **후면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적용요령

○ '22.1.1.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토지 재산세

음성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까지 납부 시

[토지]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1) / 별도(2) / 분리(3)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297㎜(CP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음성안내 바코드 18㎜

년 토지 재산세

납부하실 금액 **원**

[토지]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1) / 별도(2) / 분리(3)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세자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까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담당자
	도시지역분			문의처
지방교육세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	0.07%, 4%, 0.2%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297㎜(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건축물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음성안내

바코드 18㎜

년 건축물 재산세

납부하실 금액 **원**

까지 납부 시

[건축물]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건축물)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건축물)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70%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297㎜(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 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건축물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건축물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건축물]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담당자
지방교육세				문의처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	(×)
세율	

구분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건축물)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건축물)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7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210㎜×297㎜(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 서식(전산용 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

보내는 사람

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주택 재산세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기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까지 **원**

납기 후 까지 **원**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안내 바코드 18㎜

납부하실 금액 **원**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기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담당자
지방교육세				문의처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세부담 상한제도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9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신설 (규칙 별지 제63호의2)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1.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아래 표지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귀하(귀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의 표시								
위탁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 (영업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 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 출 근 거	※ 납세고지서 참조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고 시

1 30세미만 미혼자녀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마련(고시 제정)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 취득세 중과시 1세대 기준 ○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독립 세대 구성 가능 소득 기준 : 지침으로 운영 중	□ 1세대 기준 개선 ○ 30세 미만 미혼 소득 기준 명시 (운영지침→행안부장관 기준)

❑ 개정내용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두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

- 다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세대 인정

⇒ 현행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부 소득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경상적·반복적 소득, 현금유입이 있는 소득이 연평균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정조문(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식)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발생한 소득이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기준소득은 다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기준소득} = \text{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times \frac{40}{100} \times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정기간내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할 수 있다.

$$\text{기준소득} = \text{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times \frac{40}{100} \times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득의 범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신고 및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